

[현장논단]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의 로얄 더치 셸 사건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판결을 중심으로

신 유 정*

목 차

1. 들어가며 - 인권 관점에서, 기업에게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을 촉구할 필요성
2. 배경: 국제인권법의 프레임워크 -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업의 인권준중책임
3. 로얄 더치 셸 사건(*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기업의 법적 의무와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을 관계
4. 해당 판결의 국내적 활용 가능성

1. 들어가며 - 인권 관점에서, 기업에게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을 촉구할 필요성

1.1. 기후위기와 인권

기후위기가 인권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

*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회 기후변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은 2022. 7. 26.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결과로 생명, 건강, 식량, 개발, 자결, 물과 위생, 노동,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등이 부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¹⁾ 특히 생명권에 관하여, 네덜란드 대법원은 우르헨다 사건 판결(*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에서 기후변화가 폭염, 가뭄 등 극한기후현상과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붕괴, 식량 공급의 위협 등을 초래하며, 1.5도 목표를 초과하는 기온 상승은 이와 같은 위협을 심각하게 할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험(real and immediate risk)”을 구성한다고 보았다.²⁾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결정에서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극단적인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붕괴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과 이를 기초로 구성된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할수록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³⁾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권보호의무의 1차적 수범자인 국가가 기

1) U.N. General Assembly,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2022) UN Doc A/77/226

2)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ECLI:NL:HR:2019:2007, para. 4.2-4.7, 5.2.2, 5.6.2 (2019)

3)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전원재판부 결정.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훼손의 위험에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심판대상인 법률조항들 및 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권의 침해 여부만을 판단한다고 하고,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후위기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는 것과 기후변화를 전제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적응”이 모두 필요하며 이와 같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하여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⁴⁾ 이외에도 위에서 살핀 네덜란드 대법원의 우르헨다 사건 판결,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역시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⁵⁾

1.2.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기여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인권영향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가 1.5도 목표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인권에 불가역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이 2024. 4. 발표한 분석결과⁶⁾에 따르면 1854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큰 화석연료 및 시멘트 생산 주체들의 누적 배출량을 추적한 결과, 전체 배출량 중 국가의 배출량은 36%를 차지했을 뿐이고, 기업(사우디 아람코 등 국영기업 포함)의 배출량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같은

4)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결정.

5) *Urgenda*(n 2) para. 5.6.2,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App no 53600/20 (ECtHR, 29 March 2023)

6) Richard Heede, The Carbon Majors Database: CDP Carbon Majors Report (Climate Accountability Institute) <https://influencemap.org/briefing/The-Carbon-Majors-Database-26913> (2024. 12. 6. 접속)

보고서의 최근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 기준으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면 전체 배출량의 80%가 단 57개 기업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더라도 기업의 변화 없이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억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녹색연합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배출량 잠정치의 36%를 차지했으며, 배출량 상위 1% 기업 14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총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의 51.4%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의한 인권 침해 줄이기 위한 “적응”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영향력은 중요한데, 기업이 적절한 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건강, 안전, 생명 등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다면 건강, 안전, 나아가 생명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를 계기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기업들이 그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예를 들어 전기 배터리 생산을 위한 광물

7) 녹색연합, ‘11개 기업집단,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4% 차지… 주요그룹의 기후위기 책임 막중’ (녹색연합, 2021년 10월 26일),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tion-climate-change/90275/> (2024. 12. 6. 접속)

8) 녹색연합, ‘배출량 상위 1% 기업이 지난 10년간 누적배출량의 절반, 상위 10%가 78% 차지… 소수기업의 기후위기 책임 크다’ (녹색연합, 2022년 5월 19일),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weather-change/climatechangeaction-climate-change/94307/> (2024. 12. 6. 접속)

의 채취 과정에서 사람을 착취하고 선주민들의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한다면, 과연 그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것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

1.3. 이 글의 목적과 범위

이처럼 위기에 처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기업에 이와 같은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강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climate litigation)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비자 보호·금융 등 기존에 기업을 규제해 온 법률을 활용한 소송, 예를 들어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소송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인권법의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을 모색하는 것이고, 기업의 법률적 책임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규제 법률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을 다루기보다는, 국제인권법과 인권규범에 근거하여 어떻게 기업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하여 인권 기반 접근에 기초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수단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과 기후위기의 관계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무를 분석하여, 향후 기후소송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소고를 내놓고자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특히 국제인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술적 논의를 개괄하는 대신,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의 로얄 더치 셸 사건(*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판결에서 어떻게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국제인권법을 인용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을 구성하였는지 살펴보고, 국내법을 근

거로 한 유사 소송 제기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배경: 국제인권법의 프레임워크 –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기업이 기업의 자체 활동 또는 공급망에서의 사업 파트너의 활동에 의하여 기업이 인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연루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 중단, 완화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국가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할 의무(Stat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를 진다고 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제시했다.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면,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책임의 핵심적 이행 수단은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인데, 이는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지속적, 반복적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하여 이해관계자의 생명, 안전, 건강 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당연히 ‘기업 활동의 인권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에 해당하므로, 인권실사의 대상이 된다. 즉 기업은 그와 같은 영향을 예방, 중단,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0년 ‘인권, 기후변화 그리고 기업에 대한 핵심 메시지’라는 문서를 발간했는데 이 문서에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인권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적 예시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⁹⁾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역시 2023년 발표한 문서에서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영향을 평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인권영향을 식별하여 대응하며, 스코프 1, 2, 3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환경권의 관점에서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유엔 총회는 2022. 7. 28.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에는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이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었다.¹¹⁾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규범으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MNE Guidelines)와 이에 관한 OECD

9)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Business: Key Messages. <https://www.ohchr.org/en/business-and-human-rights/publications-and-resources> (2024. 12. 9. 최종 접속)

10)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formation note on climate change and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23)

11) U.N. General Assembly Res 76/300,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2022. 7. 28.) UN Doc A/RES/76/300.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 있다. OECD는 2023. 6. 8. 위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기업에게 기후변화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맞추어 기업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며,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¹²⁾

위 문서들에서는 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기후위기 적응 또는 전환 정책이 이해관계자의 생명, 안전, 건강, 환경, 노동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프레임워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후재난 상황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부정적 인권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영향을 예방,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로얄 더치 셸 사건(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향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기업의 법적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관계

3.1. 배경 – 연성법의 한계 및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동향

문제는 위에서 살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이행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연성법(soft law)으로 그 자체로서는 기업을 기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업이

¹²⁾ OECD, Targeted Update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23) <https://mneguidelines.oecd.org/targeted-update-of-the-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htm> (2024. 12. 6. 최종 접속)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을 유일한 이유로 하여 국내에서 사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막대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후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 및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소송 경향: 2024 스냅샷’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2600여건에 이르는데 이 중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230여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¹³⁾ 이 중에는 ‘그린워싱’에 대한 소송이나, 기업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소송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소송은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허위공시 및 광고) 또는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후적 책임을 묻는 구조를 취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폴라우 파리(Pulau Pari) 섬 주민 4명은 “원고들이 감당해야 했던 홍수 피해액의 0.42%를 배상하라”며 세계 1위 시멘트 회사 라파르주 홀심(Lafarge-Holcim)의 본사가 있는 스위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홀심은 1751년 설립 이후 전 세계 화석연료 및 시멘트 배출량의 0.42%를 차지한다고 추정되는데, 이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다.¹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개선 등 구체적인 작위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다. 기업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

13) Joana Setzer and Catherine Higham,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4 Snapsho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24)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publication/global-trends-in-climate-change-litigation-2024-snapshot>

14) 임팩트온, “우리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라파르주 홀심 상대로 기후소송” (2023. 2. 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7> (2024. 12. 6. 최종 접속)

하지 않을 책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와 NGO들은 2024. 3. 벨기에 법원에 토탈 에너지(Total Energies)를 상대로 하여, 새로운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 대비 60% 이상 감소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injunction)을 신청했다. 토탈 에너지의 활동으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⁵⁾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로얄 더치 셸 사건(*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도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세계적 기후소송의 진행 경과 및 판결의 내용을 살펴, 각국 법원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참고하여 국내법을 해석하였는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업의 법적 의무를 도출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 향후 국내 법원에서 기업의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로얄 더치 셸 사건(*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의 2024. 11. 12.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3.2. 로얄 더치 셸 사건(*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개요

이 사건은 네덜란드의 환경 단체 *Milieudefensie* 등 여러 단체가 거대 석유회사인 로얄 더치 셸(이하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셸이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고

¹⁵⁾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Hugues Falys, FIAN, Greenpeace, Ligue des Droits Humains v TotalEnergies* (“The Farmer Case”)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s) <https://climatecasechart.com/non-us-case/hugues-falys-fian-greenpeace-ligue-des-droits-humains-v-totalenergies-the-farmer-case/> (2024. 12. 6. 최종 접속)

주장했다. 원고들은 셸의 배출 감축 실패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네덜란드 민법 제6:162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유럽인권협약 제2조(생명권) 및 제8조(사생활권) 침해를 근거로 들었다.

1심 법원은 2021. 5.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셸이 2030년까지 CO₂ 배출을 45% 감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셸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¹⁶. 특히 1심 판결은 구체적인 수치(45%)를 명시하여 감축 목표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헤이그 항소법원은 2024. 11. 12. 판결에서 셸이 기후변화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가 특정한 배출 감축 목표 수치를 제시하여 강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셸이 자체 활동과 공급망에서 CO₂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¹⁷

위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판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헤이그 항소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판결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의 해석을 연결지어, 연성법적 국제인권규범 차원에서 인정되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위험을 예방, 완화할 기

¹⁶ Rechtbank Den Haag (District Court of The Hague),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Case No. C/09/571932 / HA ZA 19-379, 2021. 5. 6. 판결

¹⁷ Gerechtshof Den Haag (Court of Appeal of The Hague), Milieudefensie et al. v. Royal Dutch Shell, Case No. 200.302.332/01, 2024. 11. 12. 판결

업의 법적 의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자인 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는 향후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기후소송의 기회를 열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셸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가 네덜란드 민사법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다룬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기후변화와 인권법, 기업의 책임에 대한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결 요지

헤이그 항소법원은 우선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우르헨다 사건 판결 등을 인용하여 “위험한 기후변화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인권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나아가 위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와 입법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근거하여, 기업 역시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헤이그 항소법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덜란드법에서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법원은 사인 간의 관계에서 사법의 적용에 대하여 해석할 때에 기본권 또는 그 내재된 가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권의 ‘간접적·수평적 효력’(indirect horizontal effect)로서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헤이그 항소법원은 민사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 of care)을 정의하는 데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민법 제6:162조는 ①불법행위

의 존재 ②손해의 발생 ③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불문법에 의하여 주의의무 위반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이 때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 of care)이 적용되는데, 이 사회적 기준을 정의하는 데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미치며, 구체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따라 사회적 기준을 해석하는 규범으로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연성규범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규범들이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영향을 예방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규범들이, 대기업을 위협한 기후 변화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 때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 of care) 위반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항소법원은 특정 위험의 심각성, 위험 발생에 대한 기여도, 위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 대상으로 꼽으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고 “화석 연료 소비가 기후 문제를 만드는 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며, 쉘과 같은 대기업은 “기후 문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위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무가 있고,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개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법원은 공법적 규제에 그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을 이와 같은 의무를 진다는 결론은 같다고 명확하게 설시하였다. 나아가 EU의 환경규제를 준수할 의무는 개별 회사가 CO₂ 배출량을 줄일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헤이그 항소법원은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EU법과

과학적 합의를 고려할 때, 셸에게 45% 또는 다른 특정 비율의 절대적인 감축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IPCC 보고서 등을 고려할 때 전세계적으로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전세계적 평균값이므로 개별 기업을 기속하는 책임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개별 기업이 파리기후협약의 기후 목표와 부합하는 기후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배출량 감축에 대한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다만 주의의무(duty of care)의 범위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역량의 차이에 따라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며, “셸은 100년 이상 화석연료 시장의 주요 업체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회사들보다 셸에 더 많은 책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3.4. 해당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근거로 삼아, 민사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인권준중책임 위반 여부를 도입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본질적으로 연성규범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법절차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근거하여 기업이 일종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가능한 인권영향을 예방, 중단,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그와 같은 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다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판결 자체도 향후 주의의무의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 of care)에 대한 법리를 기초로 기업에 대한 다른 형태의 기

후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Milieudefensie) 측은 쉘이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지 않는 행위를 특정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네덜란드 불법행위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할 법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에 기초하여 특정 기업이 45%라는 구체적 수치에 이르는 절대적 감축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전자의 쟁점에서는 기업의 의무를 인정하되, 후자의 절대적 감축의무는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쉘이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에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다. 항소법원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법에 근거하여 해석되는 주의의무의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 of care)은 화석연료 생산자가 이러한 측면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심지어 쉘의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에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는 쉘이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이상 감축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쉘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위반, 즉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만일 원고 측이, 쉘이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를 촉진하여 인권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을 알면서도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에 투자를 계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투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스코프 3 (간접배출량)에 대한 쉘의 항변에 대한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단이다. 쉘은 자사의 활동과 관련한 스코

프 3 배출량은 최종사용자의 배출량이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제3자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셸이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은 셸이 스코프 3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셸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고, 셸이 자신이 생산한 화석연료 뿐 아니라 제3자가 생산한 화석연료의 재판매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매를 줄이는 것이 배출 감축을 도울 수 있다고도 실시했다. 즉 셸이 스코프 3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스코프 3(간접배출량)의 감축과 관련하여 기업이 법적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판시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기업의 절대적 감축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헤이그 항소법원이 인정한 기업의 일반적 의무, 즉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에 대한 실시를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의무에 근거하여 다른 방식의 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해당 판결의 국내적 활용 가능성

4.1. 네덜란드법상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우리 판례상 작위의무의 관계

네덜란드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문(네덜란드 민법 제6:162조)과 우리 민법 제750조의 문언상 요건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국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인(私人)의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없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한편 위와 같은 사인의 법적 작위의무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내지 간접적 효력을 원용하여, 기업이 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작위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네덜란드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면서 기본권의 간접적, 수평적 효력을 인하여 왔고,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불법행위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례와 더불어 헤이그 항소법원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연결고리로 삼아 기업이 자신의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 법리를 참고하면,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요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위험행위로 인한 타인의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투자 중단 등에 대한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여 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법적 작위의무의 내용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른 인권 존중책임을 연결하여 볼 수도 있겠다.

한편 작위의무의 발생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는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한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역시 기후변화 상황에서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데 지렛대가 될 만한 법리라고 하겠다.

4.2. 확장 가능성에 대한 상상: 적응에 관한 기업의 의무

한편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상당 부분은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억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로얄 더치 쉘 사건 판결 역시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로얄 더치 쉘 사건 판결에서 실시된 법리는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주장하는 데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로얄 더치 쉘 사건에서 법원 판시의 근본적 골자는 기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고, 기업이 그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인권침해를 중단 또는 완화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적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은 타인의 피해를 방지할 사인의 작위의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50조의 해석에 있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고, 그 침해가 중대하고 심각하며, 그 침해의 위험요인을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작위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이용하여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극한 기후상황 등 인권위험으로부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대책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법리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기후위기는 인권에 다양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 과제인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을 논하지 않

고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의 로얄 더치 쉘 사건 판결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책임(인권존중책임)을, 연성법상 책임을 넘어 국내법적 의무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비록 네덜란드 민법상 불법행위 조항에 대한 네덜란드의 판례법과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의 해석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매개로 하여,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고 중대하며 기업이 기본권 침해의 위험요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업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시작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제54차 인권이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수백만 명을 기근으로 몰아넣고, 희망과 기회, 가정과 삶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경고가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는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이제는 말뿐인 변화가 아닌 긴급하고도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소송은 기후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올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촉발하고 실질적 행동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향후에도 해외 기후소송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국내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다.